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, 조사, 심의 등을 ‘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(기존 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에서 명칭변경(‘25.1.1~))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 인력 요건을 추가(안 37조의3)

나. 피해구제 기능 개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제출처 및 구제 급여 지급중단 결정 주체를 환경부에서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(안 제37조의5, 안 제37조의13)

다.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위탁 범위를 마련(안 제3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3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1. 화학·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위원회 사무기구의 부서장 및 조사관

제37조의4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“환경부장관이”를 각각 “위원회가”로 한다.

제37조의5제2항 중 “환경부장관에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

항 전단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12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13제2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중지하려”를 “중지하는 결정을 하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중지할”을 “중지하는 결정을 할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법 제48조의2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

11.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

④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
2.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정 등
3.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내용의 검토지원
4.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여부의 검토지원
5.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내용의 검토지원
6.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·검사·조사 등의 요구
7.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여부의 검토지원

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한다)은”을 “포함한다) 및 위원회(법

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3(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<u>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.</u>	제37조의3(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「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</u>
③ <u>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 1. <u>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람</u>	③ ----- ----- <u>위원장</u> ----- ---.
<u><신 설></u>	1. <u>화학·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</u>
2. (생 략)	2. <u>위원회 사무기구의 부서장 및 조사관</u>
④ <u>환경부장관은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소속으로 비상임의 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④ <u>위원회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37조의4(자료제출의 요청) ①

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
“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
단체, 피해자 및 유족, 법 제48
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
· 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
말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
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
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자료를 보유한 기관·법인·
단체

②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
“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·의
료기록·건강보험·살생물제품
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
말한다.

1. ~ 8. (생략)

9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
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
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자료

제37조의5(살생물제품피해 구제

제37조의4(자료제출의 요청) ① 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 위원회가 -----

--

②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 위원회가 -----

제37조의5(살생물제품피해 구제

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
위원회에 _____.

③ 위원회는

제37조의12(진찰요구 등) 위원회
는 _____

 _____.

제37조의13(구제급여의 일시 중지) ① (생략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8 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39조(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의 검토

8.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

제37조의13(구제급여의 일시 중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-----

--- 중지하는 결정을 하려 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위원
회는 -----
중지하는 결정을 할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법 제48조의2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

<삭 제>

조사·감정 등

9.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결과의 통지

10. (생략)

11.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여부의 검토지원

12.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검토

13.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·검사·조사 등의 요구

14.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여부의 검토지원

15. · 16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에 위탁한다.

<삭 제>

10. (현행과 같음)

11.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15. · 16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

2.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·감정 등

제39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환경부장관(법 제 48조의15제4항, 제48조의16제1 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 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 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 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3.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내용의 검토지원 4.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 여의 지급중단 여부의 검토지 원 5.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 사 청구 내용의 검토지원 6.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· 검사·조사 등의 요구 7.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 급여의 일시 중지 여부의 검 토지원 제39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포함한다) 및 위원회(법 제54조제5항에 따 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
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13